

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137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8. 3. 2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방침 제 5 호 (2018. 3. 2)

담 당	부 장	사무국장	이사장
이수현	최준근	송연숙	문미란
협조자			

I·SEOUL·U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사업 계획

2018. 3.

서 울 장 학 재 단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사업 계획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없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I 사업 개요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장학재단 정관
- 제35대 서울특별시장 15대 중점과제 중 희망과제 4

추진경과

- '12년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신설
- '13년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이원화(대학분야, 공익인재분야)
- '16년 장학사업명 변경(하이서울장학금 → 서울희망장학금)
- '16년 2학기 서울 외 지방 소재 대학교 대학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 '18년 재단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17년)에 따른 사업 개편

추진실적(최근 3년 기준)

구분	계		1학기		2학기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11,365	11,365백만원	6,100	6,100백만원	5,265	5,265백만원
2017	4,000	4,000백만원	2,400	2,400백만원	1,600	1,600백만원
2016	3,665	3,665백만원	1,850	1,850백만원	1,815	1,815백만원
2015	3,700	3,700백만원	1,850	1,850백만원	1,850	1,850백만원

□ 2018년 주요 개선방향

- **교육소외계층 집중지원을 위한 장학금 통합적 지원체계 기반 마련**
 - 학생이 사전 등록금 예측을 통해 학업 몰입도를 증진하도록 연 1회 선발, 1년(2회) 지원으로 개편(1회성 지원 지양)
 - 서울희망장학사업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선발기간을 조정을 통해 학업장려금(대학 진로, 공익) 연계 지원
- **소득기준 확대 및 장학금액 이원화 운영**
 -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확대와 입학금 축소·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장학금을 2종으로 분리하고, 100만원 미만 학생에게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기회 확대(학기 100만원 → 학기 50만원 또는 100만원)
 - '18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조정에 따라 중위소득 90% 기준 3분위에서 4분위까지 소득기준 확대 적용
- **대학교 지역 분류기준 개선 운영**
 - 서울 시민 자격을 신청인의 학업 생활권 또는 가구 거주지 기준으로 개선
 - 학업 생활권 : 대학교 소재지(단위 캠퍼스 기준)
 - 가구 거주지 : 비서울권 대학 및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 **가구 소득 및 개인 학업역량 종합심사 도입**
 - 서울희망장학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혜택 강화로 신청인의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개인의 학업 역량을 반영한 심사 운영
- **주요 개선내용(요약)**

구분	당초	변경
선발회차	매 학기 신규 선발	1회 선발(1년 지원)
장학금	100만원(학기)	50만원, 100만원(학기)
대학기준	420개교	404개교
소득기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중위소득 90%)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중위소득 90%)
1단계 심사기준	1차 : 소득계층심사 2차 : 학사정보심사 - 학비부담금, 성적 등 3차 : 재단 심사	1차 : 대학 추천심사 - 소득분위 및 성적 합산 우수자 2차 : 재단 심사 - 대학 예산 배분, 최종 확정 등
장학금 지원·관리	2학기 : 신규 선발	2학기 : 1학기 기준 계속 지원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II 세부 내용

□ 선발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대학 또는 서울 시민의 자격을 갖춘 교육소외계층의 대학생
- 지원규모 : 연간 4,100백만원

구분	시출연금	전기이월금	합계
장학금 예산	4,000,000,000원	100,000,000원	4,100,000,000원

- 지원인원 : 2,460명 내외
- 장학금 : 연간 최대 2,000,000원
※ 등록금 범위 내 학기별 50만원, 100만원 중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년 (선발년도 내 최대 2개 학기)
- 선발절차



□ 장학금 신청 접수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¹⁾ 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²⁾ 이면서 타 시도 대학교의 학생³⁾인 정규학기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⁴⁾ 대학생
- 신청기간 : 18. 3. 12(월), 10시 ~ 3. 21(수), 17시, 10일 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재단 홈페이지)

1) 대학 소재지 기준 : 대학 캠퍼스 단위별 소재지 기준 적용

※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은 서울 주민등록 기준 적용(대학 소재지 무관)

2) 서울 시민의 자녀 기준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중 1인 이상이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3) 학생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된 자

4) 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보유자에 한함

□ 대학교 장학사업 설명회

- 운영기간 : 장학금 신청 접수 전(예정)
- 주요내용 : 사업 개편 개요 안내 및 심사절차 안내

□ 장학생 선발심사

- 1차 심사 : 대학교 추천 심사
 - 심사내용 : 주요 학사정보를 기반으로 한 장학금액 및 추천(우선 순위)
 - 심사기준

유형	기준	총점	세부 내용
가	직전학기 성적 보유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구간(200) + 성적(100) - 소득 : 0분위·기초 200, 1분위·차상위 180, 2분위 160, 3분위 140, 4분위 120 - 성적 : 직전학기 100점 환산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 심사 - 1순위 : 종합심사 소득구간 지표 점수 우수자 - 2순위 : 종합심사 성적 지표 점수 우수자 - 3순위 : 등록금 본인 부담금 높은 자 - 4순위 : 대학 자체 심사(심사기준 자율 운영 : 전체 학년 성적, 이수학점, 자기소개서 등)
나	직전학기 성적 미보유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구간(200) - 소득 : 0분위·기초 200, 1분위·차상위 180, 2분위 160, 3분위 140, 4분위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 심사 - 1순위 : 등록금 본인 부담금 높은 자 - 2순위 : 대학 자체 심사(심사기준 자율 운영 : 이수학점, 자기소개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그룹별 심사 추천 별도 운영 ◦ 2인 이상 동일한 순위로 추천 불가(우선순위가 모두 상이해야 함) 		

- 2차 심사 : 장학생 선정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대학 예산 배분 및 종합 심의
 - 유형별(가, 나) 및 대학별 장학금 배분 : 대학별 신청금액, 대학 추천정보를 고려하여 종합 심의
 - 대학 쿼터 : 유형별 1개교 장학예산 기준 최대 8% 이내, 최소 500만원 우선 배정
 - ※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 대학별 장학금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 및 예비 후보 확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장학금 지급

- 최종선정결과 발표 및 장학금(1학기) 지급 : 4. 20(금)
- 지급방법 : 대학 일괄 전달 후 대학을 통해 장학생 개별 지급
 - ※ 장학금 지급방식(계좌지급, 등록금 감면, 학자금 상환 등)은 대학 자율 운영
- 장학금 대체지원
 - 재단에서 정한 기간 내 선정자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대상자 순차 지원
- 장학금 반납기준
 - 장학금 수혜학기 중 미등록 학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장학금 이중지원 제한 대상
 - ※ 100만원 지원자 중 이중지원 제한으로 일부 반납(50만원) 인정
 - 신·편입생 중 장학금 신청 당시 대학 미등록자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수령자
 - 비고 : 1학기 장학금 반납자는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어 2학기 계속 지원 및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과 공익 장학금 신청 불가

〈장학금 이중지원 제한 기준〉

- 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의 일부(또는 전액)를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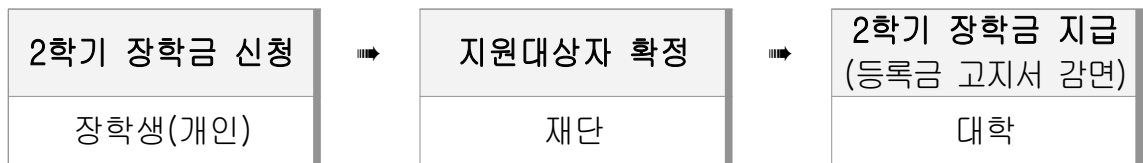
□ 장학생 사후 관리

○ 장학생 혜택

-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공익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 재단이 주최하는 성장지원기반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장학금 확인서 발급

○ 2학기 장학금 지급(계속)

- 지급절차



- 장학금 : 1학기 장학금액 지원 원칙
- 지급시기 : 7월
- 지급기준
 - 선발년도 내 최대 2회 지원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2학기 대학교 미등록자(휴학, 제적, 졸업 등)는 장학금 지급 제외
 - ※ 단, 2학기 초과학기 등록생은 장학금 계속 지원 인정
 - 2학기 장학금 지급 정산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검토

○ 장학금 지급결과보고

- 제출기간 : 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입증 가능한 은행입금(확인)증, 장학금 수혜 확인서 등을 공문과 함께 제출

□ 기관 협력사항

○ 서울시

- 언론담당관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공기업담당관 : 시 출연기관 대상 대학분야 장학사업 시민만족도조사 협조

○ 대학교

- 서울지역 대학교 장학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 안내 및 모니터링
- 대학생 장학사업 선발 공고 홍보 협조
- 공정한 학사정보조사 및 장학금 지원 협조
- 신속하고 정확한 장학금 지급 및 지급 결과보고 협조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과 관련하여 재단 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협조

○ 한국장학재단

- 중복지원 사전 심사를 위한 고객번호 지원 및 학자금지원시스템 활용
- 장학금 지급결과에 따른 최종 수혜현황 자료 제공
- 기타 정부 학자금 지원정책 관련 업무 협조